무역제도 I (수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제도 I (수출)]

수출허가 · 승인 · 신고, 통관, 운송 및 선적, 수출실적 관리 및 세금 환급은 국제 무역을 준비하는 경우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수출 시 법령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수출 시에 각 단계별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무역제도 I (수출) 1
1. 무역제도 알아보기 4
1.1. 무역제도의 이해 4
1.1.1. 무역이란? 4
1.1.2. 일반수출 5
2. 수출허가, 승인, 신고 8
2.1. 수출허가 대상 품목 8
2.1.1. 전략물자 수출 8
2.1.2. 멸종위기종 수출 12
2.1.3.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14
2.2. 수출승인 대상 품목 17
2.2.1. 플랜트 수출 17
2.3. 수출신고 대상 품목 18
2.3.1.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18
3. 수출통관 21
3.1. 일반통관 21
3.1.1. 수출통관 신고 21
3.1.2. 물품검사 및 수출통관 신고의 수리 25
3.2. 원산지 증명 26
3.2.1. 원산지증명 신청 26
4. 운송 및 선적 29
4.1. 운송절차 29
4.1.1. 해상운송 절차 29
4.1.2. 항공운송 절차 30
4.2. 선적절차 32
4.2.1. 물품 적재 및 관리 32
5. 수출실적 관리 및 세금 환급 34
5.1. 수출실적 관리 34
5.1.1.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34
5.2.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36
5.2.1. 환급절차 37

1. 무역제도 알아보기

1.1. 무역제도의 이해

1.1.1. 무역이란?

무역의 기본 구조

“무역”이란?

▪ “무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물품
-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함)
-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 소프트웨어
  -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
  - √ 위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수출”이란?

▪ “수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함]
-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봄. 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수입”이란?

▪ “수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 ※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무역제도 II (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일반수출

수출의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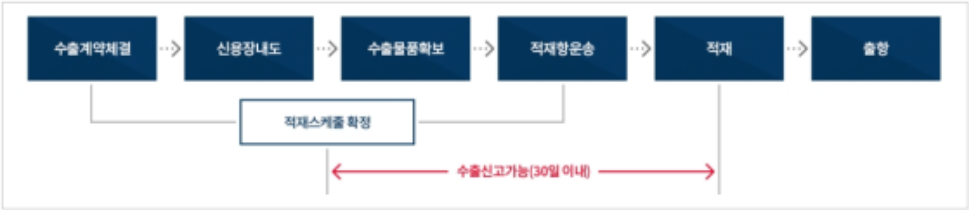
수출의 원칙

▪ 물품 등의 수출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의 목적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2항).

※ 수출의 기본 절차

• 수출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관세행정-수출입 통관-수출 통관 참조]

수출의 제한

▪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 또는 철강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위의 이유로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수출금지품목 및 수출제한품목

수출금지품목

▪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공고」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수출입공고」 제4조).

수출제한품목

▪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왕자갈·쇄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수출입공고」 제5조).

▪ 수출제한품목은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습니다(「수출입공고」 제5조).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신청

▪ 수출제한품목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 수출승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호)
- 수출승인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요건

▪ 수출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요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 수출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 등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 수출승인 신청이 승인 요건에 합당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2항).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면제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등과 그 밖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면제됩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물품 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등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 무상(無償)으로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 등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출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 ※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2. 수출허가, 승인, 신고

2.1. 수출허가 대상 품목

2.1.1. 전략물자 수출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란?

▪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참조).

- 바세나르체제(WA)
- 핵공급국그룹(NSG)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무기거래조약(ATT)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수출허가

▪ 전략물자를 수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 또는 수출통관 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본문).

-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에게로의 이전

▪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단서).

상황허가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 등"이라 함)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통관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3).

- 수입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해당 물품 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물품 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해당 물품 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 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경유·환적허가

▪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이하 “전략물자 등”이라 함)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4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전략물자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상황허가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중개허가

▪ 전략물자 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5 본문).

- 다만,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5 단서).

수출허가 등 신청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신청

▪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 또는 상황허가 신청서
-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수출하는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수출하는 물품 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 수출하는 물품 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

▪ 전략물자 등을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
-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

중개허가 신청

▪ 전략물자 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 전략물자 등 중개허가 신청서
-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 중개하는 전략물자 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중개하는 전략물자 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 중개하는 전략물자 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

수출허가 등 심사

허가의 심사

▪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1항).

- 해당 전략물자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 해당 전략물자 등의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해당 전략물자 등의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 그 밖에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허가의 면제

▪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3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정하는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3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6제3항).

-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정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7제1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등

수출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제1항).

-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자
-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자
-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중개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위반 시 제재

▪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하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제1항).

-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자
-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자

-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중개한 자

2.1.2. 멸종위기종 수출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 I 에서 정한 것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 II 에서 정한 것
- 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협약의 부속서III에서 정한 것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출허가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 그 밖에 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허가

▪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43조제1항).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허가

허가의 신청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신청서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허가 심사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 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 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

허가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 또는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다만,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수출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또는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호).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허가

허가의 신청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할 때마다

다음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제1호).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위반 시 제재

▪ 수출 허가 없이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43조 및 제93조제1항제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43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6호의2).

>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허가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ims.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이란?

▪ "수출입규제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 등"이라 함)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협약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협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신청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2.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해당)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지에 따른 폐기물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6.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7.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위 6.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9.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
8.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9.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0.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허가의 심사기준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허가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수출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포괄수출 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
-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출허가 시의 선적·하역항구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보세구역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및 신고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 이 경우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수출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수출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한 경우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가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선적항구의 지정, 선적구역의 제한 및 경유항구·경유지역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적거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2. 수출승인 대상 품목

2.2.1. 플랜트 수출

플랜트의 수출승인

"플랜트 수출"이란?

▪ "플랜트 수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참조).

-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의 수출
- 다음 설비 중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의 수출(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설비 제외)(「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 √ 발전설비
  - √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 √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 √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 √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 √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 √ 냉동 및 냉장설비
  - √ 제철·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 √ 공해방지설비
  - √ 공기조화설비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 √ 시험연구설비
  - √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따른 수출)

승인의 신청

▪ 플랜트 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1항).

- 플랜트수출승인신청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통합공고」에 따라 허가,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의 동의

▪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랜트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2항 전단).

▪ 산업통상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

승인의 통보

▪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랜트수출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며,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5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1조제3항 본문).

> ※ 플랜트수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https://www.koami.or.kr)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op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수출신고 대상 품목

2.3.1.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신고 수리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수리를 취소함)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때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수리를 취소함)
-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수리를 취소함)
-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호).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의3 및 제2호).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 관계 공무원의사무소·사업장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수출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수출실적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수출통관

3.1. 일반통관

3.1.1. 수출통관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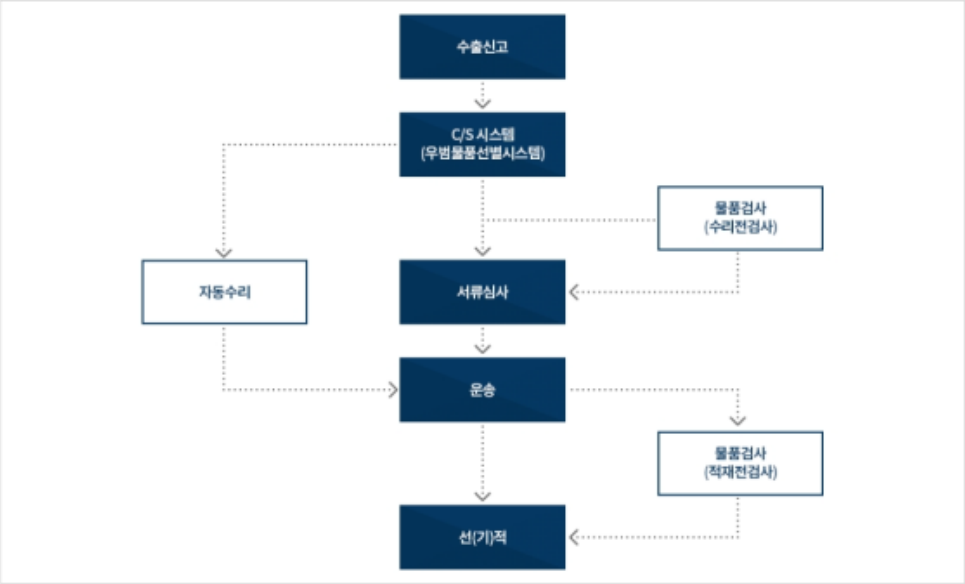
통관

"통관"이란?

▪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3호).

※ 수출통관 흐름도

• 수출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관세행정-수출입 통관-수출 통관 참조]

통관 제한 물품

공공질서침해, 국가 기밀 물품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34조).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마약류 등

▪ 마약류, 마약류의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34조의2).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35조제1항).
  - 상표권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품종보호권
  -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 특허권
  - 디자인권
  - 방위산업기술

수출통관 신고

수출통관 신고

- 물품을 수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제1항).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물품의 모델 및 중량
  -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신고인

- 수출통관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관세법」 제242조).

신고방법

▪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관세법」 제245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 제25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제2항).

- 수출신고서
- 과세가격결정자료
-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원산지증명서(「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함)
- 수출허가·승인 등 관련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의 참고서류

신고의 생략 및 간이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

-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 우편물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
  - √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 √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위반 시 제재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3항).

- 수출통관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수출통관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3항).

-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출한 자

▪ 수출통관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법」 제270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의2제1호).

▪ 수출통관 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신고서의 처리

-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 전자통관심사
  -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 물품검사

수출 심사

- 심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 수출신고서를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아닌지
  -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 여부
  - 원산지 표시, 수출입 금지 대상 여부 및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
  - 분석 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아닌지
  - 그 밖에 수출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완 요구

-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따라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요구서가 통보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참조).
- 다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신청하여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참조).
- 보완요구서에는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참조).
-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 참조).

통관보류

-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7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4조).
  - 수출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수출신고 시의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1.2. 물품검사 및 수출통관 신고의 수리

물품검사

물품의 검사

▪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합니다. 다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 및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검사대상

▪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신고 자료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수출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이 선별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
-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전분기 수출실적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검사요청

▪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제1항).

검사방법

▪ 물품검사는 컨테이너검색기 또는 차량이동형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물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등을 실시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수출통관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수출통관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단서).

신고사항의 보완

▪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9조 본문).

- 수출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수출신고 시의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9조 단서).

신고사항의 정정

▪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단서).

-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적재예정보세구역 또는 적재항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관세법」 제250조제1항 및 제2항).

▪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명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단서).

3.2. 원산지 증명

3.2.1. 원산지증명 신청

원산지증명의 신청

“원산지증명서”란?

▪ “원산지증명서”란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무역용어 참조].

▪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는 일반용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무역용어 참조].

원산지증명 신청

▪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제1항 단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한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32조의2제1항).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과실·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제2항 단서).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발급기관

▪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제1항).

발급신청

▪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본문).

- 정상적인 경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 이하 같음),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이하 같음)
-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 다만,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단서).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관세양허대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으로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제2항 본문).

일반특혜관세(GSP) 수출품

▪ 일반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9조제1항).

▪ 일반특혜관세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 이하 같음)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

▪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5조제1항).

▪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 GATT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 ※ 자유무역협정(FTA) 등 그 밖의 관세양허 수출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운송 및 선적

4.1. 운송절차

4.1.1. 해상운송 절차

해상운송

"해상운송"이란?

▪ "해상운송"이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인간 및 재화의 장소적, 공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서비스를 의미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 즉, 선박이라는 고정적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장소적 이동에 따라 해운서비스를 생산하고 이 운송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그 반대급부로써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운송형태

▪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수출업자)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91조).

▪ "항해용선계약"이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827조제1항).

선하증권(B/L) 및 해상화물운송장 발행

"선하증권"이란?

▪ "선하증권"이란 선주가 화주(수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를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무역용어 참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선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53조제1항).

-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운송물의 외관상태
-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 선적항
- 양륙항
- 운임
-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선하증권의 효력

▪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854조제1항).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3조제1항).

▪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위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63조제2항).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864조제1항).

> ※ **해상운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항공운송 절차

항공운송

"항공운송"이란?

▪ "항공운송"이란 항공기의 항복(space)에 승객, 우편 및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공로로 다른 공항까지 운송하는 운송시스템을 의미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 ※ 항공화물 수출운송 절차
>
> • 항공화물 수출운송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및 화물수령증 교부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3조제1항).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출발지와 도착지
-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 출발일시
- 운송할 항공편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운송인은 위의 기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924조제1항).

▪ 항공화물운송장을 대체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위의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924조제2항).

항공화물운송장 및 화물수령증의 효력

▪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9조제1항).

▪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개수·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9조제2항).

▪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929조제3항).

> ※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등 그 밖의 운송수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선적절차

4.2.1. 물품 적재 및 관리

수출물품 등의 적재

수출물품의 적재

▪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1조제1항 본문 및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제1항).

적재기간의 연장

▪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1조제1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 그 밖의 참고사항

휴대탁송물품의 적재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7조제1항).

우편물품의 적재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8조제1항).

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적재 기간 내에 분할하여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가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1조제1항).

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1항).

▪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2항).

▪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7조제6항제2호).

수출신고수리의 취소·관리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 세관장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1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제1항 단서).

-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 그 밖에 세관장이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

▪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해야 합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3조제1항).

▪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해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3조제2항).

5. 수출실적 관리 및 세금 환급

5.1. 수출실적 관리

5.1.1.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수출실적 확인

"수출실적"이란?

▪ "수출실적"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실적의 용도
"수출실적증명서"란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기업이 일정기간에 대한 자사의 수출 통관 관련 실적(내역)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수출실적의 용도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보관·관리 : 과거 수출입 내역에 대한 정보가 유실되었거나, 별도로 저장하고자하는 경우 은행제출 : 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등의 한도관리를 위한 자사제품 실적 인정범위 증빙 기관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환경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입지원 사업·정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관련 :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신고 물품증명 : 병행수입 등의 무역거래 시 거래처에 정품 확인 증명 무역분쟁 관련 사실 확인 등 [출처: 한국무역통계 홈페이지(https://www.bandtrass.or.kr)-고객지원-자주하는 질문 참조]

수출실적 인정범위

▪ 수출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제1항).

-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을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
-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 증명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수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제1항).

수출형태	근거규정	발급기관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국환은행장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원양어로에 따른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한국무역협회장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4항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 외국환은행장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용역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 한국무역협회장 · 한국해운협회장(해운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6호	· 한국무역협회장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그 밖의 경우		· 한국무역협회장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

▪ 물품 등의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용역의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4호서식).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제2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 이 경우 수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5.2.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5.2.1. 환급절차

관세 환급

환급대상 세금

▪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 함)가 있습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수출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출로 한정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 환급대상 수출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1.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관세등의 환급신청서
-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요량계산서(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그 밖에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서류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율 제도”란?

▪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taxlaw.nts.go.kr)-법령-기타-용어사전 참조].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의 수출)
  - √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따른 수출)
  - √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수입통관 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단,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적용 방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2항).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